[현대 테라타워 감일 입주자 모집공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번호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 26824호(2020.06.25)]

1. 지식산업센터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

가.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904-1번지 일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4BL)

나. 건설규모

건물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4층~지상8층	8,162.00㎡	4,886.07㎡	57,273.05㎡

다. 설립자 명의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무궁화신탁	㈜도남	현대엔지니어링㈜

라.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유의 및 고지사항

- 본건 신축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겸 수익자 ㈜도남,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 및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이하 "신탁계약 등"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체결한 신탁계약 등의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한다.
- 공급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겸수익자인 ㈜도남과 수탁자(매도인)간 신탁해지(제)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 등"이 종료 또는 해지(제)되는 경우(일부해지 및 일부호실 소유권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도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매도인)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등 모든 이행 책임 및 지위 포함)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도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본건 신축사업의 공급물건은 "신탁계약 등"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시행수탁자인 ㈜무궁화신탁은 사업주체(매도인)로서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시행수탁자인 ㈜무궁화신탁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범위 내) 및 신탁업무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도남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 이행, 분양계약자 앞 소유권이전, 하자담보책임, 입주지연지체상금 지급 등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가 "신탁계약 등"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도남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책임은 관련 법령 및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위탁자 겸 수익자인 ㈜도남 및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시공사는 시공상 하자에 한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함. 단, 설계상 하자는 제외)가 부담한다. 또한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시 분양계약자는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등"에 의거 ㈜무궁화신탁 명의계좌에 납입되어야 하며, ㈜무궁화신탁 명의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PF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개별 시설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

가. 용도별 공급면적

(단위 : ㎡)

용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계전기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호실수
지식산업센터(공장)		25,482.05	9,046.78	34,528.83	727.06	16,177.86	51,433.75	7,329.83	335실
지원 시설	근생시설	2,340.26	830.82	3,171.08	66.74	1,485.68	4,723.50	673.16	31실
	운동시설	552.81	196.25	749.06	15.77	350.97	1,115.80	159.01	1실
합 계		28,375.12	10,073.85	38,448.97	809.57	18,014.51	57,273.05	8,162.00	367실

※ 호실별 면적에 따라 공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면적 및 호실 수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분양당시 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이 변동되지 아니하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외단열일 경우 골조중심선을 기준으로, 내단열일 경우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 면적표기 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함.
※ 상기 용도별 세부 호실면적 및 가격은 분양홍보관에서 확인 가능함.

나. 분양공급 최소면적 (전용면적 기준)
1) 지식산업센터(공장) : 25.62㎡ (B207호 외 7호실)　　2)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 30.81㎡ (128호)
3) 지원시설(운동시설) : 552.81㎡ (B117호 단일호실)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가.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및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및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의 규정에 의한 입주가능 대상 업종

1) 지식산업센터
①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5 제1항 제2목)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는 현대 테라타워 감일에 입주가능 (현대 테라타워 감일 지식산업센터에는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입주가 가능하며, 지하1층 및 지상3층은 제조업도 입주가 가능함)

2) 지원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업종 및 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운동시설) : 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면적 범위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단, 지원시설 중 판매업은 당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업체 및 대상이 아닌 업종
2)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3)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4) 기타 환경관계 법규상 특정 유해물질 또는 중금속 배출업소
5) 소방기본법 제15조, 제27조에 의한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공장
6)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중기계의 설치 및 물품을 적재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유지관리에 위해가 되는 업체
7) 기타 소음, 진동, 먼지 등이 다량 발생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유지 및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8) 기타(기계, 전기 설비 등) 설계상 입주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판단하는 업체

다. 입주자 등의 의무
1) 당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처벌 또는 건축물의 사용제한 가능
2)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시 소방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하며, 불법 증축(복층) 및 구조변경 등 건축법 위반시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대상임

4. 공급가격과 계약금, 중도금 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

가. 층별 평균 분양가

(단위:천원/㎡, VAT별도)

구분		B2F	B1F	1F	2F	3F	4F	5F	6F	7F	8F
지식산업센터 (공장)		1,299	1,594	-	2,741	2,769	2,797	2,823	2,856	2,871	2,884
지원 시설	근린생활시설	-	1,985	5,957	-	-	-	-	-	-	-
	운동시설	1,791	-	-	-	-	-	-	-	-	-

※ 상기 분양가는 층별 평균금액으로 호수(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고, 향후 사업과정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승인으로 면적 증감시 확정면적에 따라 재 정산함. 호수별 분양가는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나. 대금납부시기 및 방법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잔금
납부시기		계약시	지정일	지정일	지정일	지정일	지정일	입주예정일
납부금액 비율	지식산업센터(공장)	10%	10%	10%	10%	10%	10%	40%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10%	10%	10%	10%	10%	-	50%

※ 중도금 납부일정 및 비율은 사업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람.
※ 중도금 납부지정일 이후 계약자의 경우 공급자와 수분양자간 계약시에 상호 조정하여 정함.
※ 시행위탁자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 대출금액(대출비율)은 정부시책과 수분양자의 신용도 및 금융권 제도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자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납부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지식산업센터 (공장)	농협은행	301-0273-5863-31	㈜무궁화신탁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농협은행	301-0273-5870-71	㈜무궁화신탁

※ 수분양자는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 납부시 상기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지정된 계좌로의 입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납부된 분양대금(타 계좌 입금 또는 현금납부 등)은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받지 못함. 또한 계약금은 정확한 금액(부가세 포함)을 입금하여야 하며, 과오납 등으로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납부로 인정받지 못함.

라. 중도금 대출 안내
1)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2) 대출기관 : 추후 통보 예정임.
3) 대출금액 : 총 공급대금의 최대 40%(지원시설), 50%(지식산업센터) 이내 중도금 무이자 적용(중도금 1회차 ~ 4회차 - 지원시설, 중도금 1회차 ~ 5회차 - 지식산업센터), 단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서 계약자 명의의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함. 시행위탁자가 지정하지 않은 타 금융기관에 신청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행위탁자가 제시한 대출약정과는 일체 관련이 없음. 또한 중도금 대출금액(대출비율) 및 무이자 적용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대출제도 변경, 개인사정 등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중도금, 잔금은 계약자 본인 자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반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4) 중도금 무이자 적용 기간 : 무이자 대출약정 기간은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의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중도금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5)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음.
6)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대출제한 등)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8)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함.
9) 시행수탁자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수분양자는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을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5. 입주예정일 : 2022년 7월 (현장여건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지정하여 통보예정)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실 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6. 부대시설 · 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구분	부대시설			복리시설			지원시설 (분양면적)
	주차장	엘리베이터		공용로비 휴게시설	공장입주자휴게실	입주자 통합회의실	
규모	466대	승객용(18인승/장애인겸용)	4대	101.44㎡ (지상1층)	68.68㎡ (지상4,7층)	59.31㎡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4,723.50㎡ 운동시설 1,115.80㎡
		비상용(18인승/장애인겸용)	4대				
		인화물용(3.5ton)	1대				
		인화물용(2.5ton)	1대				

※ 상기 시설 일부는 입주시 규모, 면적 및 용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사양은 설치조건 및 업체선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업종지정 및 기타

가. 업종의 지정 및 제한
1) 위 표시 부동산 일부 호실에는 아래 표와 같이 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호실의 계약자는 상가를 운영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아래 표시 지정 업종으로만 운영 또는 임대할 수 있음.

업종지정호실	지정업종 표시	업종지정기간
B118호	서점(문구점)	제한기간 없음
101호	편의점(담배권포함)	제한기간 없음
102, 103호	부동산	제한기간 없음

2) 위 업종지정호실의 계약자가 해당 호실을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본 조의 업종지정에 대하여 고지 후 매도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제반문제는 모두 해당 계약자에 있음.
3) 위 업종지정 호실을 제외한 업종 미지정호실의 계약자가 해당 호실을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업종지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 후 매도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제반문제는 모두 해당 계약자에게 있음.
4)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는 지정 호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관리규약에 따라 추가 개설이 가능함.
5) 근린생활시설 모든 계약자는 위 업종지정호실 외 타 호실에는 서점(문구점), 편의점(담배권포함), 부동산이 입점할 수 없음을 인지 해야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제반문제는 모두 해당 계약자에 있음. 단, 본 건물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129호에 마트가 입점할 경우 마트의 담배권은 예외로 함.

8. 입주자 선정 일시 · 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가. 선정일시(분양일시)
1) 신청접수 및 분양계약 일시 :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로 함.
2) 신청접수 및 분양계약 장소 :
- 지식산업센터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 SK V1 GL 메트로시티 1층 114호　　- 지원시설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164 홍일빌딩 2층

나. 선정방법
상기 입주자모집공고 제3호(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의 유자격자에 한해 선착순 분양

다. 분양신청 서류
1) 분양신청서(공급자 소정양식) 1부　　2)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인감(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본인(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4) 인감도장 지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지참)
5) 기타 시행자가 요구하는 분양계약에 필요한 확인서(공급자 소정양식)
※ 제반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라. 계약의 취소,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분양자(이하 "을")가 하였을 경우, 시행수탁자(이하 "갑")는 14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이를 이유로 "을"은 "갑"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① 분양대금을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잔금을 입주만료일 이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위 건물을 지정용도 및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건물의 형상을 "갑"의 승인 없이 변경 또는 증축하였을 경우
③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④ "을"이 상당한 이유 없이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았을 경우
⑤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 시행위탁자(이하 "병"), 시공사(이하 "정")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담보, 승계나 기타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⑥ 소유권이전 전에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분양물건을 훼손하거나 기타행위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
⑦ "병" 또는 "정"의 보증 등에 의해 지정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을"이 중도금의 융자를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로써 "갑" 또는 "병"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을"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 받은 경우(이 경우, "갑"은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해제하며, 계약 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출원리금,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⑧ 기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을"이 위반하는 경우
⑨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및 융자금 상환, 입주, 관리, 운영에 관한 "갑" 또는 "정" 및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나 명령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기구가 정하는 제반규정을 위반 하는 경우
⑩ 층별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시설물 설치 및 물건을 적치하거나 화재위험물 반입, 공해유출 등 타 업체에 위해가 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⑪ 기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⑫ "을"의 회생절차 / 파산절차의 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산보전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회사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⑬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격 및 입주가능업종이 아닌 부적합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하는 경우
⑭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자격이 없음이 판명될 경우
⑮ 분양대금의 일부를 대출금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약식신용조사결과 "을"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이 신용불량자로 판명되거나, 현저한 사유로 계약자로서의 자격(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9. 층별·용도별 허용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구분	위치		내용		비고
건축물의 구조	전층		지하4층 ~ 지상1층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지상2층~지붕:철근콘크리트		
높이 (층고)	지하4층		주차장 : 3.7m / 기계실 : 6.8m / 전기실 : 5.8m		· 시공시 층고가 변경될 수 있음 · 표기된 층고는 단면상의 기준층고로서 천장고와는 상이함 · 시공시 설비, 전기, 배관, 단열, 내화 피복 등의 설치로 실제 유효높이가 증감될 수 있음 · 사업부지 경사에 따른 일부 호실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음
	지하3층		주차장 : 3.8m		
	지하2층		공장, 주차장 : 4.5m		
	지하1층		공장,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주차장 : 4.2m~6.3m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 6.3m ~ 7.9m / 주차장 : 7.05m		
	지상 2~7층		공장 : 4.5m		
	지상8층		공장 : 5.0m		
설계하중 (ton/㎡)	지하4층		주차장	0.3ton/㎡	· 건축물 설계기준(하중)을 초과하는 기계 장치 설치 업체는 입주불가
			기계전기실	0.5ton/㎡	
	지하3층		주차장	0.3ton/㎡	
	지하2층		지식산업센터(공장)	1.2ton/㎡	
			주차장	1.2ton/㎡	
	지하1층		지식산업센터(공장)	1.2ton/㎡	
			지원시설 (운동시설)	0.5ton/㎡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0.4ton/㎡	
			주차장	1.2ton/㎡	
	지상1층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0.5ton/㎡	
			주차장	1.2ton/㎡	
	지상2층		지식산업센터(공장)	0.6ton/㎡	
	지상3층		지식산업센터(공장)	1.0ton/㎡	
	지상4~8층		지식산업센터(공장)	0.6ton/㎡	
소음, 진동 기준 등	소음, 진동관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함				· 소음, 진동 관리법에 위배되는 기계장치설치업체는 입주불가
외부마감	THK16칼라복층유리, AL복합판넬				
내부마감	지식 산업 센터	바닥	비닐계타일/에폭시코팅		· 전용공간
		벽	수성페인트		
		천장	무석면텍스(불연) / 수성페인트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바닥	입주자공사분		
		벽	수성페인트		
		천장	무석면텍스(불연)		
전력공급	전력공급량		4,900 KVA		· 시공시 전력용량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발전공급량		800 KW(1,000 KVA)		
전화회선	국선		500 P		· 시공시 전력용량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내선		1,950 P		

※ 높이(층고) : 시공시 설비, 전기, 배관 등으로 실제 유효폭 등은 증감될 수 있음.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분양계약 및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관한 유의사항

시행수탁사㈜무궁화신탁을 "갑", 분양희망자 및 계약자를 "을", 시행위탁사㈜도남을 "병",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를 "정" 이라 한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중 제조업의 입주는 지하 1층 및 지상 3층만 가능하며, 향후 타층에 제조업으로 입주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한다. 단, "갑" 이 설계변경 및 인허가청의 승인을 득하여 집수시설운영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조업의 입주가 가능한 층이 추가될 수 있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지상6층	지상7층	지상8층
-	제조업가능	-	-	제조업가능	-	-	-	-	-

·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시 소방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하며, 불법 증축(복층) 및 구조변경 등 건축법 위반시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대상임

[공통사항]
· 본 건물은 지식산업센터 건물로서 단지 내 지식산업시설(공장)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으로 계획되어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을"은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호실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면적표기 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되어 있으며,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된다. (평형 환산법: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분양금액은 각 호실의 위치, 평형, 층별, 기둥배치, 발코니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호실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일조량,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이 감소(침해)될 수 있다.
· 당 사업지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만 광고물의 설치가 가능하며, 커튼월(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할 경우 주무관청의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안전성, 도시미관 등)를 거쳐 설치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을"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구에서 입주대상 업종 및 자격을 위한 심사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입주 부적격업체로 판정되어 입주가 불가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분양홍보관은 분양 후 "갑" 또는 "병"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을"은 입주자모집공고의 '층별 용도별 허용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 대상 시설의 기준'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조건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용된다.

[지원시설]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내에는 음식점, 판매점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등 세부조경계획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 및 포장의 선형이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공용부분(내외부 공용복도, 데크 등)은 근접 호실 소유권자 및 임차인이 사용 및 점유할 수 없으며, 조경에 따른 가시성 저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내 취사를 위한 열원은 LNG(액화천연가스)이며 기본 가스배관(각 점포별 천장 내 분기배관에 밸브마감)만 설치되므로 각종 인허가 사항과 밸브 이후 내부배관 설치, 계량기 설치 및 가스시설 분담금은 점포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일부실에 '소방법'에 따른 공용 옥내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간판은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업체와 사전 협의 후 설치 하여야 한다.
· 점포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점포관리, 영업허가 및 용도변경 등) 및 인허가에 따른 시설추가사항 등은 "을" 또는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 지원시설의 내부시설 공사 등은 "을" 및 입점자 부담으로 하되, 계약서, 관리규약,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남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학교 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입점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을"은 관계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지정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고, 입주시 및 입주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입주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단, 7조에 업종지정 호실 제외), "갑", "병", "정"은 이와 무관하다.(업종 중복 및 경합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갑", "병", "정"은 면책되는바 이에 대하여 "을"은 일체의 이의(민원, 소송 등)를 제기하지 않는다.)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인테리어 계획은 사업주체 등의 사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주차장에 연접한 지원시설 호실은 자동차 소음, 배기가스, 분진 및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도로변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과 접한 도로상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과 관련된 구조물과 조경으로 인하여 가시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의 업종별 면적 제한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제한 면적 초과 시 입주 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한 될 수 있다.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은 계약시 표기된 용도 및 업종으로 입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용도 및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입점 전에는 시행수탁자 또는 시행위탁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입점 후에는 관련법규 및 자치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자치관리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시행수탁자 및 시행위탁자와의 사전 협의에 따른다.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호실별 대지지분은 호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분양면적의 0.1%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또는 분양면적 0.1%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입점 시 주방 등의 냄새로 인근 지원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은 입점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공장)]
· "을"은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제외], 입주 후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식산업센터 공장(또는 지원시설)의 호실별 용도는 관계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 범위에서 지원시설(또는 공장)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면 디자인과 관련하여 호실별, 층별 발코니(지원시설은 설치되지 않음) 면적이 차이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발코니는 확장할 수 없으며, 확장에 따른 문제 발생시 "을"이 책임진다.
· 지식산업센터(공장)에는 별도의 가스배관이 공급되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식산업센터(공장)에는 실 환기 목적인 전열교환기외 별도의 환기설비는 설치되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발코니에는 환기설비의 급기, 배기, 환기를 위한 덕트 또는 기계설비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하2층 지식산업센터(공장)에는 별도의 급수, 배수, 가스배관 및 냉난방시설이 공급되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식산업센터(공장)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등은 현재 시행중인 관련 법규를 따르며, "을"은 관련 법규 변경 시 이를 조건없이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일부 실의 경우 모서리 부위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을"의 미확인 등의 사유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식산업센터 내 발코니에 방수시공이 되지 않는 점을 "을"은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분양계약자는 입주자격 및 입주가능 업종이어야 하며, 입주자격이 없거나 입주 불가능 업종으로 계약 변경, 입주, 임대 등을 할 경우 분양계약이 취소, 해제 및 해지될 수 있고, 관련법령 또는 주무관청의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여야 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분양홍보관 등에서의 분양상담직원의 행위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그에 따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갑", "병", "정"은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중도금 대출 등 금융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이행되며 "갑", "병", "정"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갑"은 위 목적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의 제 법규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갑"이 본 계약서에 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을"이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위 표시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부동산 취득관련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해야 하므로 "을"이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 분양대금(계약금 포함)은 지정계좌로 납부시기에 납부금액 비율에 따라 부가세가 포함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거나, 과오납 등으로 인해 정확한 금액(부가세 포함)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대금(계약금 포함)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또한,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분양계약자인 "을"이 부담한다.
·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융자시, 담보대출로의 전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광고 홍보관련 사항]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의 조감도(투시도 등 CG), 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으며, 표현된 건물 및 각종 시설물들의 크기, 형태, 위치 및 길이, 면적, 층고 등은 분양 후 건축허가 변경 및 경미한 변경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판촉물, 안내책자, 모형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그림), 브랜드명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건축허가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 각종 인쇄물에 표시된 제품은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귀, 품절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동종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홍보관,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서, 홈페이지, 신문광고, 판촉물 등)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지하철 3호선 연장선 감일역 개발 등) 및 각종 시설(도로, 철도,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철도 공사, 한국토지주택 공사, 지자체 등에서 설치 및 개발하는 예정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갑" 또는 "병", "정"에게 귀책사유는 없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감일지구 사업개요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2호를 참조하였음.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감일역 신설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2019.10.31.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 서울 ~ 세종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2019.12.26.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였음.
- 전철 및 철도 등의 개발 계획은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지(해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을"은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각종 홍보물, 분양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간지,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병", "정"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각 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현장확인 및 설계, 시공관련 사항]
· "을"은 계약시 사전 비치된 도면 및 계약내용을 열람하여 건물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사업지는 대지 경사로 인하여 공부상 표기되는 층과 실제 현장에서의 층이 상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건물에 대한 현장 확인은 "을"의 책임이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추후 "갑" 또는 "병", "정"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설계변경에 따른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다.
· 구조변경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이 아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을"에게 통보 후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한다.
· 건물 시공 중 "갑"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을 할 수 있다.
· 본 건물은 사업지 주변 건립예정인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이 인접하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을"은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전력소 위치,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된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주변 환경 및 시설에 대해서는 "을"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구역 외부의 근린공원, 공공공지, 하천 등의 개발 계획은 관할 지자체 및 국가 시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님)

· 준공시까지 지식산업센터의 보행동선, 입면, 디자인,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갑", "병", "정"이 관련 설계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인근 유해시설의 위치는 계약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물 설치요구 및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해당지역의 기반시설공사 지연,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보이드(void) 공간 또는 썬큰으로 인한 강우, 외부공기 등 유입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을"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강우, 외부공기 등 유입에 따른 문제 및 안전사고 발생시 "갑", "병", "정"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보이드(void) 공간, 선큰 구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등으로 인하여 외기에 노출된 공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절 및 기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화장실의 숫자, 변기의 수량 및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 준공 후 증설할 수 없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설치대수, 기계설비,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승객용 승강기 중 일부는 장애인 겸용으로 운용된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 단지 경계부(건축한계선)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외부창호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사양은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 본 건물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층별, 위치별로 창호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다.
· 본 건물 기둥두께는 호실별로 상이하다.
· 옥상조경, 커뮤니티시설 설치에 따른 호실별 조망 간섭 및 입주민들의 휴게공간 이용에 따른 소음발생, 일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위치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추후 주무관청의 인허가 및 협의 등을 통해 경관조명 계획 유무가 결정될 예정이며, 경관조명이 설치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을" 및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호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의 시설물, 녹지, 포장, 조명시설 등은 인허가청과의 설치 협의 결과 또는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사업지 내·외부의 교통시설물은 해당 심의조건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준공 시 하남시 인허가기관(하남시청 등)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횡단보도 위치 및 진출입 동선, 각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 본 건물은 건축허가 등 인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형태, 외관, 대지내 공지, 교통, 환경친화 등에 의해서 설계가 반영된 것으로써 이에 따른 사항은 "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업지 주변에 신축되는 건축물로 인해 입주 후 공사소음, 먼지, 통행제한 등으로 입주자 및 지원시설 등 저층부 호실의 정상적인 운영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 및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구조 및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주변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공개공지 조경계획(시설 배치계획 포함), 녹지 계획 등 추진상황에 따라 설계, 평면, 면적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건축설계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용면적 및 벽체, 복도 등 공용면적 내에 기둥 등의 구조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을"은 하역데크 및 하역장이 일부 장소에만 설치됨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도로 계획에 의해 대지 인근 옹벽 등의 높이, 위치 및 형태 외 건물의 진출입 LEVEL이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진입로의 경사로, 주차장 높이 등이 조정될 수 있다. 또한 현장여건반영 및 인접 부지와의 LEVEL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물전면 진입부에 경사 형성 및 계단, 난간 등이 추가설치 될 수 있다.
· 설계변경, 각종 영향평가 결과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결과, 공급자의 사정 등에 따라, 일부 호실의 경우 용도가 변경(예, 지식산업시설 → 지원시설)되거나, 저층부의 공용부분 또는 커뮤니티시설 등의 위치, 구획, 면적, 평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을"은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출입문 위치 및 개폐 방향은 실시 설계 시 편의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
· 공용부위의 미관 향상 등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신규 설치 및 변경, 크기 조정 등이 있을 수 있다.
· 사업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다.
· 옥탑층 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옥상에 설치되는 피뢰설비, 안테나, 무선통신중계기, 태양광 등의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다.
· 지상 3~8층 공용복도에는 완강기 및 수직구조대가 설치될 예정이오니 사전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소방, 전기, 통신 등 설비(냉난방 포함)관련 사항]
· 소방관련법령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별 제연설비, 방화벽, 방화셔터 및 출입문이 전용 또는 공용부분에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소방구역에 따른 방화벽 등 제반 설비 설치 시 임의 조정 및 불법철거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
· 소방관련 인허가에 따라 각 시설 및 각 호실의 내·외부에 벽체에는 공용의 소방시설(소화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등을 포함한 사업지 내·외부에 소방차 정차공간이 바닥에 표시될 수 있다. 또한 소방차 활동 공간에 주정차 및 "을"의 소유물을 방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에는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을"은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관련법 및 상업시설 건축설계 구조에 적합하고 사용 가능한 용도로 분양 호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건축설계 구조로 인하여 특정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갑", "병", "정"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소방법에 따라 지하 1층 및 지상 1층 공용 진출입로에 소방차 진출입 동선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은 이를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적치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방화구획계획에 의하여 호실간 벽체 중 일부가 내화벽체로 시공될 수 있으며(입주자는 방화벽체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주차장 및 복도 일부 구간, 엘리베이터홀 등에 방화문 또는 방화 셔터, 소화전함 등이 설치될 수 있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는 화재 시 필요한 소방 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관련법령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별 제연설비 및 피난기구 등이 전용면적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관련 법령에 의해서 호실에 적용된 방화문 및 방화벽 등은 임의 조정 및 철거 할 수 없다.
· "을"은 지식산업센터(공장)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각 호실의 전력을 분양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호실 별 설치된 기본 전력량 이상 사용시, 용량 증설에 따른 모든 전기공사관련 비용은 입주자(소유자 및 임차인)가 부담 하여야 한다.
· 별정통신(구내통신) 사업 및 위탁관리업체와 관련된 사업자 지정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전기공급을 위하여 본 사업 계획 구역 내 한전 공급설비(PAD S/W)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지역전력 공급사업자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하남시청 및 한국전력 등의 계획에 따라 지주형 시설물(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하며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될 수 있고,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하남시청 및 한국전력 등의 계획에 따른 시설물(지상기기, 지주형 시설물 등)은 공간확보 불가능 등으로 부득이 단지 내 공공시설에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상 1층 D.A(Dry Area_급배기타워)와 도시가스 관련 시설, 맨홀, 실외기 등 공동사용을 위한 기반시설물이 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호실에서는 해충, 냄새,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D.A 공간은 구역별 급배기를 위한 설비 통로공간으로 입주자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입을 수 있으며, 보행 및 진출입시 바람, 소음, 매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본 건물은 지역난방의무지역으로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 운동시설)에 실별 냉난방용 팬코일유니트가 설치되며, 입주자는 개별적인 냉난방장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실외기실은 구획되있지 아니한바 이와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관리주체와 협의해야 한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실별 냉난방용 팬코일유니트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실별 냉난방설비는 난방과 냉방의 동시 사용은 불가하며 공급되는 열원에 따라 난방 및 냉방의 계절에 따른 선택이 가능함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냉난방 공급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중앙열원 공급시간은 입점자와 관리주체가 별도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의 실별 냉난방 사용요금은 열량계로 산정되어 사용량에 맞게 부과되며, 공용부분은 별도 계량 후 전체 실을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의 환기설비(전열교환기)의 컨트롤러는 유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무선 컨트롤러 미적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내 실내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가 실내 상부에 점검구 포함하여 설치되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다.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상1층에는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인접호실에서는 냄새,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건물 외벽에는 실내 환기장치용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실별 주방용배기는 기본 덕트배관 (천장속배기용 분기덕트/0.5m)만 공급되며 식당 입점 시에는 주방후드용 덕트 연장시공 및 후드설치는 입점자부담이며 주방 후드 시공 시 방화용풍량조절댐퍼(FVD)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주방 후드 내에 소방법규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은 실별 급수배관이 설치되며(출입구 1m이내), 급수배관은 계량기를 설치하고 밸브마감 처리하며 밸브이후 공사는 입점자 공사분으로 시행해야 한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는 별도의 급탕시설이 없으므로 필요시 분양계약자가 별도로 급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실별 수도(급수)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며, 계약 및 분양 전에 설립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입점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실별 배수 배관이 설치되며, 별도의 배수구는 설치되지 않으며 배관 노출로 일부 공간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에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 시 그리스트랩 등을 설치(입주자 부담)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하부 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정압기의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개폐를 위해 화물적재 및 가구 설치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일부 실 천장 내부에는 공용 설비 덕트 및 배관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입점자는 공용부(복도, 옥상, 화장실, 주차장 등)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은 입점자가 해결해야 한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내부는 기계설비 및 관련 덕트, 배관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고, 그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도 및 전용면적내 일부구간 천장고가 낮아지는 등 시공 상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경우에도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하 2층에는 쓰레기처리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환기장치가 설치되므로 이에 따른 냄새,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을"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계약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등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사용한다.
· 해당 건물 옥상에는 냉각탑, 배기휀 등 기계설비와 냉난방배관 등을 위한 샤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준공 후(입주) 관리 및 확인사항]
·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동 시행규칙 제26조의3에 의거 관리한다.
· "을"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입주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된다.
· 각 호실의 시설기준은 "정"에서 사용검사 받은 상태대로 공급하며, 기타 영업에 필요한 제반시설(호실의 칸막이, 진열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기시설, 간판 등)은 "을"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지식산업센터(공장)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출입구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건물 내 차량 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 등은 사용 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을"은 관련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주시 건물 명칭 및 동호수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호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다.
·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 공개공지 등은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사용승인 후 단지 내 공개공지 및 조경수목, 조경시설물,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은 "을" 및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커뮤니티 시설 등)은 전체공용으로 배분되며, 임의로 사용 및 점유 할 수 없다.
· 건물의 1층 휴게공간, 휴게데크, 옥상 등에 설치 될 정원 등은 동 전체 입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당층 입주자들이 임의로 이용에 제한을 할 수 없다.
· 입주자 공동시설(휴게실 등)은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당층 입주자들이 임의로 이용에 제한을 할 수 없다.
· 로비는 동 전체 공용시설로 로비에 면한 점포의 벽체는 임의로 해체 및 변경 할 수 없다.
· 준공시까지 본 건물 [지식산업센터(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의 보행동선, 입면 디자인,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급자가 관련 설계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소 등)은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된다. 공동시설에서 발생되는 부담금(전기, 수도, 가스, 제세공과금) 및 내부규약에서 정한 관리비 등은 "을" 및 입주자가 분담하여 부담한다.
· "을"은 입주 시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약 3개월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고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을"은 주변 교통지체 해소 및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본 건축물의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여, 주변 시설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지식산업센터(공장)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이용자 및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주차장 이용차량의 원활한 동선 분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설계변경 또는 차량 차단기 설치추가 및 위치 변경 등으로 주차대수 및 구획이 변동될 수 있고, 용도 및 층별로 주차장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 용도별로 계획 주차대수(용도별 면적 기준에 준하여)에 의해 주차 배정 시 건물 내 일부 설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차 관리 및 운영은 관리규정 또는 입주 후 편성되는 입주자협의체 및 관리단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차량경사로에 인접한 실의 경우, 차량 입출차시 차량경고등 및 경고음으로 인한 빛 공해 및 소음, 진동 등 이 발생할 수 있다.
· 수목, 시설물 및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로 인해 저층호실의 일조 및 보행동선 간섭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을"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주 후 개별 인테리어에 의해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요구 및 청구를 할 수 없다.
·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건축물 외관에 시공사의 C·I,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우수 및 중수(오폐수) 처리시설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지식산업센터(공장)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당 사업지의 차량 진출입 구간은 도로 구역편입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며, 이에 따라 부과되는 도로 점용료는 "을"이 부담한다. "을"은 관련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분양홍보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그 외 문의사항은 분양홍보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 부동산개발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함

구 분	광고게재문구	비고
부동산개발 등록업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등록번호 : 서울 090057)	
영업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인허가 명칭	현대 테라타워 감일 현대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기관	하남시청	
인허가 번호 및 인허가 연월일	2020-건축과-신축허가-85 (2020.05.01.)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용도, 규모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904-1번지 일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4BL) - 지목 : 대 - 용도 :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 규모 : 지하 4층 ~ 지상 8층, 연면적 57,273.05㎡	
공사착공/준공/입주예정일	- 착공일 : 2020년 06월　- 준공예정일 : 2022년 07월　- 입주예정일 : 2022년 07월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시공자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도남	
자금관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분양대행사	지식산업센터(공장) : 주식회사 무한피앤에스 / 지원시설(근생, 운동시설) : 더나은 주식회사	

현대 테라타워 감일

현대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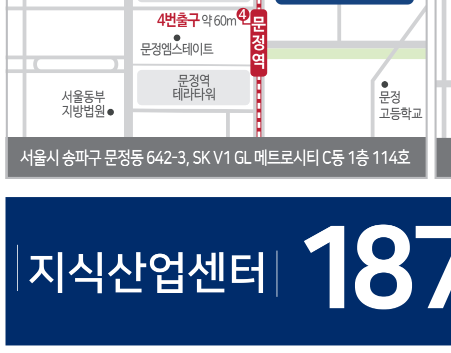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 SK V1 GL 메트로시티 C동 1층 1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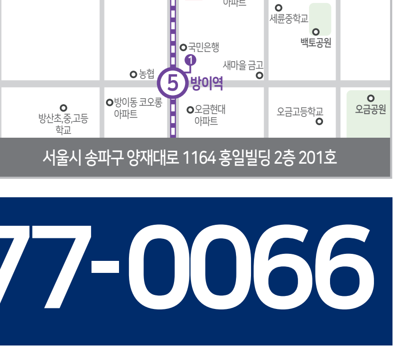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164 홍일빌딩 2층 201호

지식산업센터 1877-0066

상 업 시 설 1877-0258

시행 무궁화신탁　위탁 (주)도남　시공 현대엔지니어링